

## 대정부 건의 ①

# 가전업계의 폐가전제품 재활용 대책 추진에 따른 업계 애로건의

본회는 지난 4월 22일 환경문제와 자원재활용문제와 관련, 환경처, 상공자원부에 가전업계의 폐가전제품 재활용 대책 추진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본고는 건의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

### 1. 가전업계의 폐기물 예치금 부담 추정액

- 현행부담금의 실적('92년 기준) : 3,580백만 원  
○ 향후부담액 추정(환경처 안) : 14,780 백만 원  
- 대상품목의 추가 : TV, 세탁기 + 냉장고,

### 에어콘

#### ○ 현 행

- 요율체계의 변경 및 인상 : kg당 30원 → 폼목에 따라 1대당 1,200원~3,600원
- 예치금부담액 인상을 : 412.8%
- 순 이익에서 차지하는 예치금 비중(%) : 현재 3.5% → 151%

(단위 : 수량(천대), 금액(백만원))

구 분	'92		'93(환경처안)		증감율 (%)
	예 치 금	산 출 근 거	예 치 금	산 출 근 거	
예 치 금 (A)	3,580	kg당요율×평균중량×시판수량	14,780	대당요율×시판 수량('92년)	412.8
칼 라 T V	1,560	30원×20.86kg×2,493천대	2,978	1,200원×2,482	90.9
세 탁 기	2,020	30원×42.48kg×2,020천대	4,206	2,800원×1,502	108.2
냉 장 고	-	-	6,840	3,600원×1,900	신 규
에 어 콘	-	-	756	2,400원× 315	신 규
순 이 익 (B)	10,156	생산액×매출액대순이익율 (한국은행 경영분석) (3,385 십억원×0.3%)	9,783	생산액×매출액대 순이익율(3,261십억원 ×0.3%)	
A/B(%)	3.5		151		

### 2. 폐기물 예치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가전업계의 애로사항

#### 1) 가전제품의 경우 제조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산업 폐기물을 배출자라는 측면에서 그 처리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또 폐가전제품의 처리에 있어서는 배출자인 소비자나 지방자치단체 보다도 그 제조자에게 처리책임을 지우

고 있어 폐기물처리의 1차적인 책임 소재가 배출자인지? 제조자인지가 명확치 않은 상태로 가전업계는 2중의 처리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2) 환경문제와 자원 재활용 문제는 선진국의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제조자, 재활용 업자 등 각계의 적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협력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데 비추어 우리나라는 폐기물 예치금제도 시행으로 제조자에 거의 모든 책임을 집중화 시켜 그 해결이 더 어려운 것으로 사료, 실례로 예치금 제도 시행 1년이 경과했지만 아직까지 그 실효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전세계적으로 볼때 예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유럽 국가들도 비교적 회수가 용이한 포장용기 등에 대해서만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와 같이 가전 제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일본의 경우는 소비자, 지방자치단체 민간 회수 및 재활용 업계 등이 중심이 되고 정부 및 제조자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폐가전품의 재활용 및 처리를 하고 있다.

4) 가전업계가 폐가전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회수 후의 문제 즉 재활용 업계의 조성, 최종 폐기물의 파쇄, 소각, 매립 등의 처리 시설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서 가전업계에서 우리나라의 재활용 업계의 육성, 최종 폐기물 처리 시설 확보의 책임까지 부여하는 것은 무리이다.

5) 현행 폐기물 예치금 제도는 대상 품목의 선정, 요율 산정 등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데 비추어 그 책정기준이 명확치 않은 상태로 운용 될 우려가 있어 특정산업에 대해서만 환경 문제의 재정 부담을 집중화 함으로서 형평

성이 결여되어 있다.

6) 가전업계는 최근 국제경쟁력 약화 및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성장성이 크게 둔화되고 기업의 채산성도 극도로 약화된 상태, 또 이로인하여 수많은 계열 중소부품 업계의 경영이 위기 상태에 직면해 있는 형편에서 예치금을 412.8%나 인상하게 되면 순이익액보다 예치금이 1.5배나 많아 투자 확대, 경제회생은 고사하고 수출 주력산업의 연쇄 붕괴가 우려된다.

7) 특히 신규품목으로 지정된 냉장고는 역시 환경문제인 특정물질(CFC)합리화 기금 출연금 부담증가('93년 99% 인상으로 6억원 부담)와 대체 냉매용 냉장고 개발에 막대한 투자('96년까지 500억원)를 하고 있어 작년에 이를 지정하지 않은 품목과 에어콘의 경우는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시책 영향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25.3%)되어 매출액의 1.6%의 적자사업으로 향후 수출전략 산업화를 위해 출혈수출을 단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로서는 부담 능력이 없는 사업이다.

8) 현행 예치금 제도는 세법상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조세 감면도 이루어지지 않아 현 여건으로는 제조업계로서의 부담능력이 없는 실정이다.

9)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예치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강행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약화된 수출주종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더 한층 악화시킬뿐 아니라 모처럼 조성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추진중인 공산품 가격동결이 사실상 어려워져 국민 물가고를 또 다시 유발하게 된다.

10) 가전업계로서는 폐가전품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폐가전품의 감량화, 재활용 용이화 등을 위해 리사이클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고 재활용 업계와 연대해 폐가전품의 회수, 재활용 사업을 범 업계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 3. 애로건의

최근의 우리 가전업계는 국내외적인 여건변화로 경영이 극도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고 또한 신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로 제조업 경쟁력제고 및 경기활성화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우리 가전업계는 물가안정화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공산품 가격 인상 억제 방안으로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하, 동결하기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에 예치금 대상 품목의 확대와 요율의 인상으로 물가 안정화시책의 부응이 어려우며 또한 우리 가전업계는 폐가전품을 회수, 처리하여 재활용 촉진 사업을 업계가 능동적으로 자체대책을 수립 시행해 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부담금 제도로 전환해 주실 것

과, 아울러 동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대상품목 중 에어콘은 에너지 절약 시책으로 내수 판매 물량이 극히 저조하여 전년비 25.3% 감소 했으며 수익면에서도 매출원가의 1.6%의 적자를 내고 있어 향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현재 출혈 수출을 단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국내 공급물량도 적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회수처리에 문제가 없으며, 세탁기의 경우도 당초 폐기물 관리법 시행과정에서 냉장고가 제외되면서 대안으로 삽입된 품목으로서 주 구성품이 재활용 가치가 (철재, 플라스틱, 비중이 85%) 높고 회수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대상품목에서 제외시켜 주시고, 또한 요율은 어느 정도 경제희생이 이루어질때까지 현행 수준을 유지 해주실 것과 제1종 재활용 대상업종 지정에서도 우선 TV, 세탁기, 등을 먼저 시행해 보고 점차 에어콘, 냉장고 등으로 그 대상 업종을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정부 건의 ②

### 전자산업 지원세제 개선건의

'93. 4. 27, 상공자원부에 건의

#### 1. 조세감면 규제법

##### ○내 용

##### ○개정사유

- 1) 업무용 부동산 교체시 지가상승 등으로

특별부가세 납부액 만큼의 추가부담으로 업계의 경영압박 초래, 또한 종업원 사택용 부동산 및 하치장, 사무실용 부동산은 기업활동에 필수적이므로 업무용으로 인정

- 2) 제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전자산업의

항 목	제 목	내 용	
		현 행	개 선
동법 제67조의 12	법인의 양도 소득세 면제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 및 종업원 사택용 부동산, 하치장, 사무실용 부동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li> </ul>
동법시행령 제57조의 2	법인의 임시투자 세액 공제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기간 : '93. 6. 30일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이 임시투자 세액공제 기간 : '94. 12. 31일까지</li> </ul>
동법 제88조	최저한세의 세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계산시 감면대상액의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이전의 과세표준×100분의 12를 최저한세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계산시 감면대상액의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이전의 과세표준×100분의 7를 최저한세로 함.</li> </ul>

재도약 기반강화를 위해 임시투자 세액 공제 기간의 연장

3)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에 대한 당초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

론 조세감면 규제법의 일부조항이 사문화 되고 있음

## 2. 부가가치세 법

항 목	제 목	내 용	
		현 행	개 선
동법시행령 제46조	부가가치세의 감면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재화수입의 경우)에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만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재화수입의 경우)에 학술연구용품, 첨단기술산업 및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 포함</li> </ul>
통칙 제5-2-7-16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하는 영수증의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이 세금계산서에 갈음하는 영수증의 범위에 항공권, 입장권, 금전등록기 계산서 등만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이 세금계산서에 갈음하는 영수증의 범위에 지로청구서 추가</li> </ul>

## ○사 유

1) 현재 첨단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생산 성향상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관세가 감면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상으로는 연구 개발 설비 등에 대해 동세를 부과하고 있어 입법취지에도 어긋남

2) 업무전산화로 인한 지로청구서의 거래급증으로 소액의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의 이중 발행으로 인한 막대한 시간적 손실 및 인력 낭비

## 3. 법인세 법

### ○내 용

○사 유 : 건축법과 법인세법의 모순

- 현행 건축법에는 충고에 따른 인동거리의 이격 및 진입도로, 소방도로 등을 개선하여 건축하여야 하나 이 경우 법인세 법의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이 낮아 비업무용으로 인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

항 목	제 목	내 용	
		현 행	개 선
동법시행규칙 제 18조	건축물의 부속토 지 인정의 확대	○ 건축물의 부속토지 계산시 ① 바 닥면적×용도배율 ② 면적÷ 용적률×1.1중 넓은면적 적용	○ 건축물의 부속토지 계산시 ① 바 닥면적×용도배율 ② 면적÷ 용적률×5중 넓은면적 적용

#### 4. 특별소비세 법

품 목	현 행		건 의 안	
	구 分	기본세율	구 分	기본세율
CTV 및 관련제품	20" 초과 20" 이하	20% 15%	21" 초과 21" 이하	10% 비과세
TV 영상투사기	—	30%	—	15%
VTR 및 관련제품	—	25%	—	10%
음향기기	—	15%	—	비과세
냉장고	300L 초과 300L 이하	20% 15%	400L 초과 400L 이하	10% 비과세
세탁기	6Kg 이하	20%	전규격	비과세
전기 전열 가스 기구	M/W OVEN 진공소제기 기타	— 1KW 이하 —	— 전규격 —	비과세 비과세 10%
공기조절기 및 관련제품	11KW 미만	25%	11KW 미만	15%

\* 칼라영상 모니터는 CTV 규격구분에 의거 특소세 부과

#### ○내 용

##### ○사 유 :

- 1) 국민생활 수준과 경제여건상 불합리
- 현 국민생활수준 및 경제여건을 고려시, 현재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생활필수품화되어 특별한 소비재가 아님
- 특히 가전제품이 일반서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정착됨에 따라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를 부담(저소득층의 상대적 빈곤감 고조)
- 2) 여타 사치성 물품과 조세형평상 불공평
- 소득계층과 차별없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에 오히려 여타 사치성 물품보다 높은 특별소비세 부과
- 국민차(800CC 이하) : 특소세 면제
- 고급승용차(그랜저급) : 학생 등의 학습용으로 사용되는 VTR과 동일 세율

- 특히 특소세율에 따른 총간접세 부담율은 더욱 형편이 안맞음  
3) 음향기기 전문업체의 부도가 속출할뿐 아니라 중소부품업체 연쇄 도산으로 부품산업기반 붕괴우려

#### 5. 지방세 법

#### ○내 용 :

##### ○사 유 :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식당, 기숙사 등의 부대시설이 공장법위내에 포함되나 지방세법에는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이 포함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뿐 아니라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은 공장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공장내에 설치되어 있

항 목	제 목	내 용	
		현 행	개 선
동법 시행 규칙 제47조	법적 공장범위 의 확대	○ 법적 공장의 범위는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로 함	○ 법적 공장의 범위에 공장부지내 의 식당, 기숙사 등 필수적인 시 설 모두 포함
동법 제234조 의4	근로자의 사원 APT 및 기숙사 의 분리과세	○ 종합합산 과세 표준계산시 근로 자의 사원 APT 및 기숙사 과세 표준에 포함	○ 종합합산 과세 표준계산시 근로 자의 사원 APT 및 기숙사 는 분 리과세

는 이들 건물도 법적 공장범위에 포함시켜  
야 함.

- 종합합산 과세는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 및  
투기의 소지가 많은 부동산에 과세되므로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한 공  
동주택은 생산활동의 일부로 보아 분리과세  
되어야 함.

### 대정부 건의 ③

## 전자산업의 기준공장 면적률조정 건의

'93. 4. 27, 상공자원부, 내무부, 산업연구원 건의

### 1. 공장입지 기준 면적률 조정

- 근 거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상공부고시 제87-14호('87.  
5. 29)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11에  
의한 별표 4

#### ○ 주요내용 :

- 1)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의 기준공장 면  
적률 조정

- 2) 공장부지 여유면적비율 확대

#### 현 행

-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10% 이내  
최대 4000m<sup>2</sup>

#### 개 정

-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20% 이내  
최대 3000m<sup>2</sup>

#### ○ 건의사유

- 1) 전자업종은 제품의 특성상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 제품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속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어느정도의 여유 대지가 필요하나 기준공장 면적률을 과다로 적정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이관투자시 부동산 가격의 상승, 공장입지확보의 곤란 등으로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아니라 공장이 이원화될 경우 생산관리의 어려움과 엄청난 부대비용의 상승 등 전자업계의 경영악화를

업 종 별	현 행		개 정	
	3000M <sup>2</sup> 미만	3000M <sup>2</sup> 이상	3000M <sup>2</sup> 미만	3000M <sup>2</sup> 이상
383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				
38321 음향 및 영상기기제조업	30	45	20	25
38323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	40	40	20	20
38325 방사선장치 및 전기의료장치 제조업	40	45	20	25
38326 음반 및 녹음테이프 제조업	45	45	25	25
38331 전기냉장고 제조업	40	40	20	20
38341 전자관 제조업	20	45	10	20
38342 반도체 및 관련장치 제조업	20	45	면제	20% 이하 또는 면제
382 기계 제조업				
38251 자동자료처리 장비 제조업	30	40	20	25
38252 계산기 제조업	35	50	20	25
38256 컴퓨터 프로그램매체 제조업	50	50	25	25
38261 자동판매기 제조업	35	45	20	20
			20	25

## 초래

2) 철강산업 및 기타 비금속광물 제조업의 경우(3000m<sup>2</sup>이상)는 기준공장 면적율이 10~20%이나 첨단업종인 전기 전자기기제조업은 35~45%로 타산업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업종간의 형평에도 어긋남

3) 전자산업은 최근 임금상승 등으로 자동화시스템 등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나 최초 기준면적율의 과다로 신속한 전환이 불가 하며

4) 특히 반도체산업은 제품의 Life Cycle이 매우 짧아 적기에 투자하여 양산체계를 조기 확보해야 하는 Timing산업이며 기술개발이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투자 지속형산업으로서 신공장 건설이 2~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초 기준면적률의 과다로 공장부지 확보가 어려움

## 2. 계산기 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램매체 제조업, 자동판매기 제조업의 분류 변경

○근 거 : 통계청 고시 제91-1호

## ○내 용 :

현행 계산기 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램매체 제조업,

자동판매기 제조업, 기계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전자기기 제조업으로 변경

## ○사 유

1) 현행 계산기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램제조업, 자동판매기 제조업은 기계제조업(382)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2) IC회로 등 전자 및 전기부품을 주로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상 전기 전자기기제조업(383)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 3. 공장 전용식당 등의 공장범위 인정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내 용 : 법적 공장범위의 확대

현행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를

(공장부지내의 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하고 식당, 기숙사는 제외) 식당, 기숙사 등 필수적인 시설도

모두 포함해 줄 것

○사유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식당, 기숙사 등의 부대시설이 공장범위에 포함되나 지방세법에는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이 포함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뿐 아니라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은 공장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공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들 건물도 법적 공장범위에 포함시켜야 함.

### 대정부 건의 ④

## 외국환 관리규정 개정 건의

(연지급 수입제도)

’93. 4. 27, 상공자원부, 재무부에 건의

### ○ 일본 등으로부터의 연지급 수입 허용

– 관련법규 : 외환 관리규정 7-24조, 7-25조

#### – 내용

현 행	개 정
○ 표준항해일수 10일 이하인 지역으로부터의 연지급 수입은 관세율 100분의 5이하인 품목	○ 표준항해일수 10일 이하인 지역으로부터의 연지급 수입이 가능하도록 본조항 삭제

#### – 건의사유

1. 엔고로 인한 국내업계의 수입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2. 전자산업중 부품의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선 다변화 곤란

3. 국내 전자업계에서 수입하는 부품의 대부분이 수출용 원자재이기 때문에 연지급을 허용해도 수입의 급증 우려는 없음

4. 엔고로 인한 국내 전자산업이 과거에는 수출중대로 연결되었으나 일본이 동남아 등의 현지 진출로 후발개도국의 추격 뿐만 아니라 대일 무역역조만 심화될 우려가 큼